

## 부속서 13-라

### 미얀마에 대한 제13.3조(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) 및 제13.4조(협력)의 적용

1. 이 협정의 발효일에 미얀마가 제13.3조(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)의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있지 않은 경우, 미얀마는 이 협정의 발효일 후 3년 내에 그러한 의무를 준수한다.
2. 제13.3조(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)의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와 제13.4조(협력)는 미얀마가 제13.3조(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)의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는 대로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 협정의 발효일 후 3년 내에 미얀마에 대하여 적용된다.
3. 3년의 경과기간 동안, 미얀마는 3년 기간의 종료 시까지 자신이 제13.3조(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) 및 제13.4조(협력)를 준수함을 보장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하고 그러한 기간 종료 전에 그러한 조들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한다.
4. 어떠한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, 미얀마는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적절한 경쟁법과 규정을 개발 및 채택하고 그러한 법과 규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하나 또는 복수의 당국을 설립하는 데 대한 자신의 진전 사항을 당사자들에 알린다.